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1495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1. B

2. C

3. D

4. E

변 론 종 결 2022. 6. 28.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793,134원 및 2021.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18,549,776원에 대하여는 연 22.9%의, 593,215원에 대하여는 연 12.6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C, D, E 사이에 체결된 2020. 5. 29.자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 D, E은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8. 11. 30. 오토론 관련 채무

1) 피고 B은 2018. 11. 3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면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원금 2,0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약정이자율 연 19.90%, 원리금은 매월 14일에 528,76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되, 연체시 이자율은 연 22.9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피고 B은 위와 같이 대출받지 않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갑제11호증의 1(오토할부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휴대폰본인인증에 기한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대출 계약 체결을 위한 서명날인을 완료하기까지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이 2019. 7. 15. 이후 연체를 계속하여 기한의 이익의 이익을 상실하자, F은 위 피고에 대한 집행에 착수하여 2019. 12. 24.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G)를 통해 4,387,080원을 배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050,032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중 1,450,224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18,549,776원(= 20,000,000원 - 1,450,224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3) 원고는 2020. 4. 21. F로부터 2020. 3. 31.까지의 위 차용원금 잔액18,549,776원, 이자 2,069,896원 합계 20,619,672원 및 부수권리 일체를 포함한 채권을 양수하고, 2020. 5. 7. F을 대신하여 위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피고 B이 2021. 4. 12. 현재 위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원리금은

24,986,845원{= 양수금 20,619,672원 + 2020. 4. 2.부터 2021. 4. 12.까지의 연체이자 4,367,173원(= 원금 18,549,776원 + 18,549,776원 × 22.9 × 376/365원, 원미만 버림)}이다.

나. 2019. 1. 7.경 대출금 채무

1) 주식회사 H은 2019. 1. 7.경 피고 B에게 600만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24. 1. 7., 약정금리 ‘기준금리 + 연 6.92%’, 지연배상금율 ‘약정금리 + 연 3%’로 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9. 6. 18.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2019. 5. 31.까지 대여원리금 666,928원(= 원금 593,215원 + 연체 이자 73,713원)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포함한 채권을 양수받아, 그 무렵 위 저축은행을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 B은 2021. 4. 12. 현재 위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806,289원(= 양수금 666,928원 + 연체이자 139,361원)이다.

다. 한편 피고 B의 모 I이 2020. 1. 15. 상속인으로 자식인 피고 C, B, E, D, J를 두고 사망하였는데, 위 상속인들 사이에 2020. 5. 29.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1/5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C, E,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1/3씩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 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하여 5,321,000원, 위 원고에 대한 양수금 24,463,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강제1 내지 11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 광주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금 25,793,134원(= 위 1. 가.의 24,986,845원 + 위

1. 나.의 806,289원) 및 2021.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위 돈 중 18,549,776원에 대하여는 연 22.9%의, 593,215원에 대하여는 연 12.61%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 E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5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위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15 지분(= B 고유의 상속지분으로서 B이 포기한 1/5 지분 × 위 피고들에게 상속된 1/3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한 이상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위 피고들의 선의항변

위 피고들은 B과는 거주지가 멀고 교류도 없어 B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B과 피고 C, D, E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15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남구 L에 있는 M아파트 N동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O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0층 아파트

지층 624.17㎡, 1층 429.06㎡

2층 내지 12층 각 아파트 각 1381.47㎡,

2층 내지 18층 각 682.56㎡

19층 613.26㎡, 20층 543.9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남구 L 대 1240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P호 철근콘크리트조 59.4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2401분의 31.3402 끝.

